

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

2019년 10월호

1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
- 나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
- 다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- 라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
- 마.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
- 바.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- 사.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
- 아.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- 자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- 차.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
- 카. 감사위원회운영규정
- 타. 전산관리위원회규정
- 파.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
- 하. KSM 운영지침

2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
- 나. K-OTC시장 운영규정
- 다. K-OTCBB 운영시행세칙
- 라.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
- 마. 표준투자권유준칙
- 바.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
- 사.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
- 아. 증권 대차거래 약관
- 자.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
- 차. 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

1. 한국거래소 규정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.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| 아.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|
| 나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| 자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|
| 다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| 차.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|
| 라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| 카. 감사위원회운영규정 |
| 마.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| 타. 전산관리위원회규정 |
| 바.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| 파.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|
| 사.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| 하. KSM 운영지침 |

1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(2019/9/25 개정·2019/9/30 시행)¹⁾

1) 개정 이유

- 자율공시 항목 신설 및 상장법인의 자율적 해명기회 확대 등 공시사항을 정비·완화하여 공시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해명공시 대상법인 및 신고시한 등(제7조의6 제1항)

- 공시대상 매체가 국내 언론사 등으로 한정되므로, 무분별하게 해명공시가 확대될 가능성 없어 관련 내용 삭제
 - 예) 중국 일간신문, 중국 인터넷 언론매체 등은 모두 제외
- 해명공시 대상법인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말함

□ 공시전문인 인증기준 관련 규정(제7조의5 제2항 및 별표 4)

- 내규 정비와 관련하여 별도 내규인 「유가증권시장 공시전문인 인증기준」을 세칙의 별표로 편입하며 근거 규정 신설
 - 거래소는 공시전문인 인증을 위하여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연 20시간 이내에서 기업공시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
 -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의 평가에 합격한 자를 공시전문인으로 인증

□ 자율공시 항목(제8조)

-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와 관련하여 우수기업으로 선정받은 사실을 자율공시 항목으로 추가

*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1) 유가증권시장 공시전문인 인증기준은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

[근무혁신 인센티브제]

- (개요) 정부(고용노동부)에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·생활 균형의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근무혁신을 유도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)
- (내용) 기업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신청을 받아 근무혁신 실태를 평가하고 이에 대해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각종 인센티브 제공

나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19/9/10 개정·2019/9/16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시행(2019.9.16)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 개정되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서 세칙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통일규격증권 및 통일규격증권 발행증명서 폐지(제2조 제1호 삭제)
 - 실물증권 발행이 없으므로 실물발행을 전제로 하는 통일규격증권 및 통일규격증권 발행증명서를 폐지
- 발행등록사실확인서 징구(제2조 제3호)
 - 증권의 상장신청시 해당 증권의 발행·등록을 증빙하는 첨부서류로서 발행등록사실확인서를 징구하도록 함
 - 발행등록사실확인서란 한국결제원이 발행한 발행등록사실확인서를 말함
- 일반주주 수를 확인하는 증빙서류 정비(제26조, 제42조 제3항, 제53조 제1항)
 - 일반주주 수 산정, 주식분산 미달 사유 및 신규상장 심사요건의 적용시 제출서류인 예탁결제원의 실질주주명부 및 실질소유자명세가 각각 폐지되고 소유자명세로 대체됨에 따라 이를 반영
- 주식예탁증권 예탁계약체결시 신고의무 폐지(제71조 제1항 제1호)
 - 주식예탁증권의 전자등록 의무화로 인해 예탁기관과 예탁계약체결이 불필요하므로 신고의무를 폐지
- 의무보유 주식등의 일시적 계좌간 대체 등 허용사유 정비(제129조)
 - 실물증권의 인출이 없이 권리행사가 가능한 사유는 폐지하고, 예외적 사유 또는 거래소가 인지하여야 할 계좌간 대체 및 질권 설정·말소 등을 위한 전자등록을 허용

□ 전자등록을 위한 사전심사신청 서류의 징구(별표 3)

-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시행으로 발급이 중지되는 ‘채권등록발행내역통보’ 서류 대신, 동법에 의해 새로 발급되는 ‘사전심사신청’ 서류로 대체하여 징구

□ 주식의 유통일의 기재를 요구(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32호)

- 신주 발행의 경우 전자증권제에서는 신주교부 개시일이 없으므로 주권상장법인과 예탁결제원이 결정한 유통일을 기재하도록 하여 신주 상장절차의 편의를 제공

다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19/9/10 개정·2019/9/16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라 실물증권을 전제로 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실물증권을 전제로 한 규정정비 등(제7조, 제9조의3, 제28조의2, 제30조, 제101조의11, 제137조, 제140조, 제141조)

- 주권발행 전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주식을 주권으로 간주하는 규정 삭제
- 자본금 감소 등으로 인한 주권제출 관련 사항 정비
 - ‘주권제출기간의 마지막 날’을 ‘소유자를 확정하는 기준일’로 용어변경
- 경매대상 증권이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증권인 경우의 업무절차 마련 및 법률 폐지사항(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) 반영

□ 국고 채권 등에 대한 질권 취득·말소방법 변경(제101조의8)

- 국고채권 등을 통한 질권설정·말소 방법을 전자증권법에 따른 방법으로 변경
 -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3조 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결제회원의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되어 있는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에 대하여 전자증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가 질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, 해당 질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인출

□ 법령 개폐사항 적용(제66조, 제76조, 제78조, 제99조의5, 제132조)

-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시행으로 「공사채등록법」 및 「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사항 정비

라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19/9/10 개정·2019/9/16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에 따라 종전 실물증권의 상장 및 권리행사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상장신청서류 등 변경(제3조 제2항, 제12조 제1항)

- 실물증권 발행을 전제로 한 상장예비심사청구 서류 등이 전자증권법에 따른 서류로 대체
- 통일규격주권, 권종별 견양, 주권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고자 발급한 문서 및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를 예탁원이 발급하는 발행등록사실확인서로 변경
 - 예비심사청구 시 실물주권 발행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규상장신청 시까지 전자등록에 따른 서류 제출

□ 의무보유제도 반영(제3조 제8항, 제18조 제6항, 제21조의2, 제21조의3 등)

- 실물증권을 보관해 인출을 제한하는 현행 보호예수제도에서 전자등록계좌에서 처분등을 제한하는 의무보유제도로의 전환 반영
- (기존) 주식등의 계속보유·매각제한·보호예수 → (개정) 의무보유
- (기존) 주식등의 인출 → (개정) 주식등의 처분등으로 변경하여 규정
 - 계좌간 대체, 질권 설정·말소 및 매각 등
- 주식등의 보호예수를 증명하는 소유주식등 보관증명서를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변경
 -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명목회사가 발행한 주식등이 전자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실물주식에 대한 보호예수 제도 유지

□ 보호예수 주식의 일시인출 프로세스 변경(제21조)

-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보호예수 관련 업무처리가 권리자별 전자계좌등록부 내 처리방식으로 변경
- 계좌부 내에서 주식교환→권리행사 등이 실시되어 유통 가능성이 없으므로 거래소의 일시인출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
 - 다만, 질권설정에 따른 일시인출의 경우 현행과 같이 거래소가 자금목적용을 고려하여 사전승인하는 절차 유지 (제20조의2)

마.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(2019/9/26 개정·2019/9/30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중견·중소기업의 근무혁신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와 관련하여 평가 결과가 우수한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율공시 항목을 신설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근무혁신 평가등급 관련 자율공시(제13조 제19호)
 - ‘근무혁신 인센티브제’에 따른 평가 결과 ‘근무혁신 우수기업’으로 선정된 기업이 해당 결과를 자율공시할 수 있도록 항목 신설

바.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19/9/10 개정·2019/9/16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라 실물증권을 전제로 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실물증권을 전제로 한 규정정비 등(제7조의2, 제9조의5, 제12조의8, 제28조의2, 제36조의11)
 - 자본금 감소 등으로 인한 주권제출 관련 사항 정비
 - ‘주권제출기간의 마지막 날’을 ‘소유자를 확정하는 기준일’로 용어변경
 - 증권의 보관방법을 전자등록방법으로 변경
 - 보호예수제도가 의무보유등록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용어를 포함하는 조문 정비
- 국고 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 등에 대한 질권 취득·말소방법 변경(제36조의10)
 - 국고채권 등을 통한 질권설정·말소 방법을 전자증권법에 따른 방법으로 변경
 -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3조 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결제회원의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되어 있는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에 대하여 전자증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가 질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, 해당 질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인출

사.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19/9/10 개정·2019/9/16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에 따라 종전 실물증권의 상장 및 권리행사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신규상장신청 서류 등 변경(제12조, 제13조의3 등)
 - 실물증권 발행을 전제로 한 상장심사청구 서류 등을 전자증권법에 따른 서류로 대체
 - 통일규격주권, 주권건양, 주권불발행확인서 및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를 발행등록사실확인서로 변경
 - 기술평가기업의 경우 지정기관투자자의 소유주식등 보관증명서를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변경
 - 신규상장심사신청시 실물주권 발행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규상장일까지 전자등록 관련 서류를 제출

아.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19/9/10 개정·2019/9/16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시행에 따라 실물증권을 전제로 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실물증권을 전제로 한 규정정비 등(제18조, 제58조)
 - 자본금 감소 등으로 인한 주권제출 관련 사항 정비
 - ‘주권제출기간의 마지막 날’을 ‘소유자를 확정하는 기준일’로 용어변경
 - 증권의 보관방법을 전자등록방법으로 변경 등
-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질권 취득·말소방법 변경(제57조)
 - 국고채권 등을 통한 질권설정·말소 방법을 전자증권법에 따른 방법으로 변경
 -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3조 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결제회원의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되어 있는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에 대하여 전자증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가 질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, 해당 질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인출

자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19/9/20 개정·2019/9/23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신용위험한도 수시조정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유동성공급을 위한 재원의 종류 확대 등을 통하여 결제안정성 및 위험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신용위험한도 수시조정을 위한 근거(제94조의2)
 - 결제회원이 자본금의 변경에 따른 순자본 또는 자기자본의 변동사항을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, 그 밖에 신용위험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용위험한도액을 변경 할 수 있음
- 유동성공급을 위한 결제이행재원의 종류 확대(제112조의2, 제112조의4)
 - 증권금융회사,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과 설정한 신용한도 또는 외환스왑을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추가

차.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(2019/9/20 개정·2019/9/23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유동성공급을 위한 재원의 종류 확대 등을 통하여 결제안정성 및 위험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유동성공급을 위한 재원의 종류 확대(제46조, 제47조)
 - 증권금융회사,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과 설정한 신용한도 또는 외환스왑을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추가
- 외국감독기관 등록 등 관련 특례(제104조)
 -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(CFTC, U.S.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)의 파생상품청산소(DCO, Derivatives Clearing Organization) 등록면제 준수요건 반영
 - CFTC에 등록된 스왑데이터저장소(SDR, Swap Data Repository)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보고의무를 명시하고, 회원의 중복보고 금지 조항을 신설
 - 미국인 등에 대한 청산수탁요건 특례 적용 관련, 인용 대상인 CFTC규정(CFTC Regulation)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

- 달러이자율스왑거래 청산 관련 정산금리 산출기준시간 변경(별표 1의2)
 -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신하는 외화금리의 최종 확인에 필요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정산금리 산출기준시간을 조기화
 - 최근 외화금리 수신 관련 오류 증가로 인한 운영리스크 확대에 대응
 - 정산금리 확정 시점의 조기화를 통해 청산증거금 필요액 등 최종결제정보를 적시에 산출하여 회원사 업무 편의성을 제고하고, 원화이자율스왑거래 청산업무와의 일관성 도모

카. 감사위원회운영규정 (2019/9/2 개정·2019/9/3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외부감사인 선정과 관련한 감사위원회 권한 변경 및 선정 절차의 근거를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 선정권한 기준 변경(제13조)
 -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 선정권한을 기존 '선임 승인'에서 '선정'으로 변경
- 외부감사인 선정절차 등은 既 신설한 외부감사인 선정 및 선임 지침(2019.1.18 시행)을 준용(제18조, 제19조)

타. 전산관리위원회규정 (2019/9/20 개정·2019/9/30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전산관리위원회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내부위원 구성 방법을 개선하고 외부위원 참여 기준을 마련하고, 조문에 대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전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및 내부위원 구성 기준 규정(제4조 제1항 제2호)
 - 위원 구성을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분
 - 내부위원 구성 기준에 위원장이 심의대상사업 연관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부위원 중 1인에 한하여 거래소 내 다른 집행간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

□ 외부위원 신설 및 구성 기준 규정(제4조 제1항)

- 위원장이 심의에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2 제1항의 외부IT전문위원단 중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함

□ 외부IT전문위원단 요건 및 임기 구체화(제4조의2 제1항, 제4조의2 제2항)

- 거래소 임직원이 아닌 자로서 IT관련 산업, 학계 또는 공직 등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중 4명 이하의 위원을 위촉하여 외부IT전문위원단을 구성
- 외부IT전문위원단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, 2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임

□ 외부위원의 보안각서 작성 의무화(제11조 제2항)

-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와 실무반에 종사하는 자 및 외부전문가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
 - 위원으로 위촉되는 외부위원은 별지 서식의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개최 전 위원장에게 제출

□ 외부위원 수당지급 기준 규정 (제12조 제1항, 제12조 제2항)

-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은 「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경비지급기준」 중 심의·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 및 외부인사에 대한 지급금액을 준용

파.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(2019/9/3 개정·2019/9/9 시행)²⁾

1) 개정 이유

- 기술평가 신뢰성 제고 및 소재부품기술기업 성장활성화를 위해 전문평가기간·절차 및 소재부품기업 기술평가절차 간 소화 등을 반영, 지침을 개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전문평가기간 확대(제5조 제4항)

- 국내기업 전문평가기간을 기존 4주에서 6주로 확대

□ 전문평가인력 이력 확인 강화 및 교체 요청 근거(제5조 제6항)

- 전문평가기관 평가인력이 평가에 부적합하거나 평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평가인력 교체요구 근거 마련

2) 시행일 이후 전문평가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

- 소재부품기술기업에 대한 기술평가특례 절차 반영(제5조 제1항, 제9조 제1항)
 - 1개 전문평가기관의 전문평가로 예비심사 청구가 가능하도록 기술평가특례 절차 간소화
 - 다른 기술평가특례 기업의 경우 2개 평가기관 전문평가 요구
 - 1개 전문평가기관 전문평가(소재부품 기술기업)에 따른 재평가 절차 정비
 - 평가기관 BBB 등급인 경우 즉시 재평가 신청 가능
 - 다른 기술평가특례 기업의 경우 2개 평가기관 전문평가 결과 2등급 차이일 경우 가능

- 기술평가 관련 실무협의회 근거 마련(제11조)
 - 평가 현안을 공유할 수 있는 거래소 전문평가기관 실무협의회 근거 마련

하. KSM 운영지침 (2019/9/11 개정·2019/9/16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시행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 변경 등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전자등록의 정의조항(제2조)
 - 전자증권법 시행으로 실물증권의 발행 없이 계좌부 기재만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증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
 -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권리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을 전자등록의 정의로 신설

- 등록신청서류 등 변경(제4조)
 - 주권을 전자등록한 법인의 경우, 실물증권 발행을 전제로 한 등록신청 서류 등이 전자증권법에 따른 서류로 대체 됨에 따라,
 - 통일규격주권 권종별 견양, 주권불발행확인서 및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를 전자등록기관이 발급하는 발행등록 사실확인서로 변경
 - 다만, 비상장법인 주권의 전자등록은 선택사항임을 감안하여 전자등록하지 않은 비상장법인에 한해 기존 지침과 동일한 서류 징구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2. 금융투자협회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가.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| 바.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|
| 나. K-OTC시장 운영규정 | 사.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|
| 다. K-OTCBB 운영 시행세칙 | 아. 증권 대차거래 약관 |
| 라.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| 자.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|
| 마. 표준투자권유준칙 | 차. 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|

2. 금융투자협회*

가.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(2019/9/11 개정·2019/9/16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시행(2019.9.16)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 변경 등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인용조문 변경(제18조, 제22조)

- 전자증권법 시행과 동시에 ‘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’(전자단기사채법), ‘공사채 등록법’이 폐지되면서 ‘전자증권법’으로 통합
- (기존) 전자단기사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 인용 → (개정) 전자증권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인용
 - 전자증권법에서는 기존의 ‘전자단기사채등’이 ‘단기사채등’으로 표기

□ 용어변경(제6조)

- 실물발행을 전제로 하는 일부 용어를 전자증권제도상의 개념이 포함되도록 변경
- (기존) 보호예수 → (개정) 의무보유등록
 - ‘보호예수’는 금전, 유가증권 등의 실물을 일정보관장소에 임치하는 개념이므로 전자증권제도상 개념을 포함하려면 ‘의무보유등록’으로 용어 변경 필요
- 전자증권제도는 상장증권시장에는 의무사항, 비상장시장에는 선택사항인 바, 상장법인 시장에는 ‘보호예수’를 ‘의무보유등록’으로 용어변경하고 장외법인시장에는 ‘보호예수’와 ‘의무보유등록’을 병기

*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나. K-OTC시장 운영규정 (2019/9/9 개정·2019/9/16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에 따라 전자증권제도 관련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
 - 비상장 기업의 경우 법상 전자등록이 선택사항인 바, 현행 실물전제의 규정에 전자증권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자구 정비

2) 주요 내용

- 전자등록의 정의(제2조)
 - 실물발행 이외에 주식에 관한 권리의 발생·변경·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전자등록으로 규정
- 실물 기반 조문 정비(제5조, 제6조, 제8조, 제9조, 제37조)
 - 실물 기반 조문에 전자증권 관련사항 반영

구분	기존 규정	개정
진입요건	통일규격증권 발행	통일규격증권 발행 또는 주식의 전자등록
주권발행 증명서 발급주체	명의개서대행회사	명의개서대행회사(전자등록주식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전자등록기관)
주주수 판단기준	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	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(전자등록주식의 경우 주주명부 및 소유자명세)
매매거래 정지사유 (구주권 제출 관련)	주식분할 등을 위하여 주권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	주식분할 등을 위하여 주권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전자등록주식과 관련하여 이에 준하는 경우

다. K-OTCBB 운영 시행세칙 (2019/9/11 개정·2019/9/16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에 따라 전자증권제도 관련 사항을 시행세칙에 반영하기 위함
 - 비상장 기업의 경우 법상 전자등록이 선택사항인 바, 현행 실물전제의 규정에 전자증권 관련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대상종목에 전자등록주식 반영(제3조)

-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의 방식으로 발행된 주식도 K-OTCBB 거래대상종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
 - K-OTCBB대상종목은 K-OTC시장 등록종목 및 지정종목이 아닌 비상장주권 중 자본시장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법 제308조에 따라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한 비상장주권 및 이에 준하는 전자등록된 비상장주권에 한함

라.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(2019/9/18 개정·2019/9/23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한국거래소의 코스피200 위클리옵션 상장예정(2019.9.23)에 따라 동 신상품에 대한 주문착오방지 경고·보류기준 신설을 위함
 - 금융투자협회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주문금액, 주문수량, 주문가격 기준으로 구분하여 경고·보류기준 설정

2) 주요 내용

□ 기준설정(제2-5조)

- 코스피200옵션과 동일한 기준값 적용
 - 기초자산, 거래승수, 호가가격단위 등 코스피200 위클리옵션 상품 특성의 대부분이 코스피200옵션과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
- 경고기준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, 보류기준 50억원 초과

마. 표준투자권유준칙 (2019/9/18 개정·201/10/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금융위원회는 (간이)투자설명서 및 펀드 종류(클래스) 명칭에 대한 투자자 이해도 제고 방안을 발표(현장 혁신형 자산 운용산업 규제 개선, 2019.3.8.)
 - 동 방안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(간이)투자설명서를 개정(2019.3.28. 개정, 2019.10.1. 시행)
 - (기존) 펀드 종류(클래스) 명칭을 영문으로만 표기
 - (개정) 펀드 종류(클래스) 명칭을 '판매수수료 부과방식-판매경로-기타 펀드 특성'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고, 클래스별 세부 설명을 추가

- 이에 펀드판매사가 공모펀드를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제시하거나, 그 임직원 등이 (간이)투자설명서를 활용하여 투자권유하는 경우 한글로 된 종류(클래스) 명칭을 활용토록 할 필요

2) 주요 내용

- 펀드판매사의 펀드 종류(클래스) 한글 명칭 사용 및 그 임직원의 한글 명칭 설명에 대한 근거를 마련(회사참고사항 8-1, 14-1)
 - 펀드판매사가 온라인 매체(인터넷 홈페이지, HTS, MTS 등)를 통해 펀드를 제시하는 경우 한글로 된 종류(클래스) 명칭도 표기하도록 함
 - 참고: 은행통장, 잔고증명 등 펀드가입 후 종이서류 등에는 표기 생략 가능
 - (간이)투자설명서를 사용하여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한글로 된 종류(클래스) 명칭은 3단계로 구분된다는 점과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의 종류(클래스) 한글 명칭을 설명토록 함
 - (3단계 구분) 판매수수료 부과방식-판매경로-기타 펀드 특성

바.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(2019/9/12 개정·2019/9/16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에 따라 전자증권제도 관련 사항을 약관에 반영하기 위함
 - 비상장 기업의 경우 법상 전자등록이 선택사항인 바, 현행 예탁제도가 병행됨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용어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전자증권 관련 사항 반영(제6조, 제11조)
 - 자본시장법상 투자자계좌부, 예탁자계좌부 및 예탁증권 등을 전자증권법상 용어와 병기
 - 예탁관련 제도는 증권 등이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(자본시장법 제308조 제1항)

[자본시장법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제2절 예탁관련제도]

제308조(예탁대상증권등) ① 이 절은 증권등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그 증권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②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등(이하 “예탁대상증권등”이라 한다)은 예탁결제원이 지정한다.

사.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(2019/9/12 개정·2019/9/16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에 따라 전자증권제도 관련 사항을 약관에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전자증권 관련 사항 반영(제16조, 제17조)
 - 거래증거금으로 사용되는 대용증권의 예탁 및 인출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
 - 거래소 파생상품업무규정 제91조 제1항 개정 조항(거래증거금 등의 예탁 및 인출방법) 반영
 - 예탁자계좌부 기재방식에서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탁증거금 관련 대용증권의 질권설정 조문 정비
 - 거래소 파생상품업무규정 제129조 개정 조항(대용증권의 질권 설정 및 말소) 반영
 - 예탁관련 제도는 증권등기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(자본시장법 제308조 제1항)

아. 증권 대차거래 약관 (2019/9/12 개정·2019/9/16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에 따라 전자증권제도 관련 사항을 약관에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전자증권 관련 사항 반영(제5조)
 - 자본시장법상 용어인 예탁자계좌부와 전자증권법상 용어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를 병기
 - 예탁관련 제도는 증권법이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(자본시장법 제308조 제1항)

자.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(2019/9/18 개정·시행)

1) 개정 이유

- 한국거래소의 위클리옵션 도입(2019.9.23 거래개시) 및 주식시장 CB(Circuit Breaker)발동시 KRX300 선물거래의 필요적 중단 등 개정(2018.12.10 시행) 반영하기 위함

[서킷 브레이커(CB, Circuit Breaker)]

주가가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또는 하락하는 경우에 지나친 변동성으로 인해 경제주체들에게 주게 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제도

2) 주요 내용

□ 위클리옵션 도입 관련

- 거래소 장내파생상품 종류에 코스피200 위클리옵션 추가
- 거래소 장내파생상품 주요명세 중 결제 관련하여 결제주 추가

□ KRX300 선물거래의 필요적 중단 등 개정

- (기존) 유가증권시장, 코스닥시장의 CB 발동시 KRX300 선물거래의 필요적 중단 등 조치
- (개정) 지수구성비중이 높은 유가증권시장의 CB 발동시 KRX300 선물거래의 필요적 중단 등 조치

차. 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(2019/9/5 개정·2019/9/16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라 인용 조항 변경, 문구 추가, 소유자 확인서류 변경 등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전자증권법 시행과 동시에 ‘공사채 등록법’이 폐지되면서, 실물 없이 등록발행되는 채권은 전자증권법에 의해서 전자등록발행되며 기발행된 물량은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
 - (인용조항) 공사채 등록법에 대한 인용을 전자증권법 인용으로 변경(제1-1조, 제1-3조, 제1조)
 - (문구추가) 실물채권 발행시 사용되는 ‘권면총액’ 등의 용어를 전자증권에는 ‘전자등록총액’ 등의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(제1-1조)
 - (확인서류) 소유자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공사채 등록법상 등록필증에서 전자증권법상 소유자증명서 또는 전자등록증명서(공탁 및 보증금 대납 용도로 사용)로 변경(제5-3조)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